

국민과 예술인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현장중심의 위원회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모든 의견을 귀하게 듣겠습니다.

## 아르코 혁신 TF

### 민간위원

김미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위원)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김진하 (미술평론, 나무아트 대표)  
김하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위원장)  
문동만 (시인)  
민정연 (꽃다지 대표)

### 예술위원회

김기봉, 나종영, 송형종, 유인택 (위원)  
박두현, 정대훈, 정준화, 차민태 (사무처)



# CONTENTS



예술행정의 민주화와 변화를 위한 아르코 혁신(안) 공청회

## 〈아르코 혁신 TF〉 보고서

- 08    **관련 주요경과**
- 
- 10    **제 1장 : 서론**
- 
- 15    **제 2장 : 블랙리스트 이후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절. 모든 것은 블랙리스트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  
    - 〈아르코 혁신 TF〉 민간위원들의 전언 -  
2절. 우리는 언제나 블랙리스트가 현재의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 
- 27    **제 3장 : 혁신 제안의 내용**  
    I. 조직분야 혁신 의제 : 총 10가지  
    II. 사업분야 혁신 의제 : 총 13가지
-



# 예술행정의 민주화와 변화를 위한 아르코 혁신(안) 공청회

일시 2018년 5월 24일(목) 오후 3시  
 장소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아르코 혁신 TF

## 프로그램

1부. 혁신안 발표	
	사회 : 김진하 (아르코 혁신 TF 위원, 미술평론, 나무아트 대표)
15:00	인사말 및 경과보고 김기봉 (아르코 혁신 TF 위원장, 예술위원회 위원)
	<아르코 혁신 TF> 민간위원들의 전언 김하은 (아르코 혁신 TF 위원,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위원장) 민정연 (아르코 혁신 TF 위원, 꽃다지 대표)
	서문발표 문동만 (아르코 혁신 TF 위원, 시인)
	예술위의 현재와 혁신과제 김상철 (아르코 혁신 TF 위원,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15:50	휴식
2부. 공개토론	
	사회 : 김미도 (아르코 혁신 TF 위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16:10	- 혁신안에 대한 질의·응답 - 종합토론
	정리 및 폐회



---

‘예술행정의 민주주의와 환골탈태를 바라는’  
**〈아르코 혁신 TF〉 보고서**

---

※ 본 보고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혁신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공청회를 통한 의견이 보완되어 확정될 예정입니다.

2018년 5월

아르코 혁신 TF

## 〈관련 주요경과〉

### ○ 2015년

- 1.6 ‘2015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에 따른 ‘대학로 X포럼 개최
- 9.9 JTBC ‘2015 창작산실’ 검열의혹 보도
- 9.11 국정감사,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배제, 블랙리스트 문제 제기  
(도종환 의원)
- 10.6 979명의 연극인이 ‘검열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

### ○ 2016년

- 6~10 21개 극단의 22개 작품이 참여하는 ‘2016권리장전-검열각하’ 개최
- 10.10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의원실이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 10.12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자 등 좌파 문화예술인 9,437명 블랙리스트 보도

### ○ 2017년

- 1.6 특검, 블랙리스트 존재 확인 발표 / 1.21 특검, 김기춘, 조윤선 구속
- 5.10 문재인 대통령 취임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중략)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 6.19 도종환 문화부 장관 취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발표

“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문화부 공무원) 여러분도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에서 배제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일을 했던 분들에게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정농단에 관여한 문화행정에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을 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직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쇄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받지 않을 권리,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술인들도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직권남용이면서 형법위반입니다. 동시에 헌법위반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다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7.31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공동위원장: 도종환, 신학철)

○ 2018년

- 5.16. 문화비전2030 및 새예술정책 발표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과 국민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중략)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새로운 문화비전과 예술정책에 담았습니다.” (중략)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국가예술위원회는 기관의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 보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가예술위원회 설립보다는 예술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예술정책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 제 1장: 서론

2016년 10월 12일,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풍문으로만 떠돌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무려 9,473명에 이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이었습니다. 기소된 책임자들의 재판 과정이나 언론보도, 국정감사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정권 차원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통제는 광범위했으며 악의적이었고 졸렬한 정파성에 기초하여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헌법 22조에 오롯이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가들을 체제 밖으로 추방하거나 순치시키려 했던 반헌법적 국가범죄였습니다. 문화예술가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사상검증이라는 모멸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유례없는 반문화적 폭거였습니다. **일련의 과정에 문화체육부는 물론 산하 여러 단체들도 블랙리스트 수행기구로 전락했으며 안타깝게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도 그 기구 중 하나였습니다.**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재판부는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자 위법’임을 명확히 밝히며 실행의 주요한 논거로 삼았습니다. 그보다 앞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수행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운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도 동일한 사유로 공동정범으로서 법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시적 권력이 자신들의 편향적 잣대로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문화적 권리를 차별 배제하는 것은 엄중한 위헌 사유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가치를 예술행정의 기본 전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권력이 집권하더라도 이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르고 혁신 TF〉는 국정농단에 저항하여 촛불을 든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의지와 요구로 태동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블랙리스트이기도 했던 외부의 민간위원들, 예술위가 본연의 독립적 자율기구로 자리 잡길 바라는 6기 위원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 예술현장

의 신뢰 회복을 염원하는 예술위 직원들이 협심하여 지난 4개월 남짓 예술현장과 소통하며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예술 현장과 소통하는 것을 기치로 문화예술인들이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추고 자존감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여성·신진·지역을 배려하며. 그들이 예술창조의 주역이자 예술행정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예술위는 상급기관인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거쳐 하달된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블랙리스트를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술위가 오랜 기간 쌓아온 공신력이 심각히 훼손되었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예술위가 보다 독립적인 기구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블랙리스트가 수행된 프로세스와 책임선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가 지녀야 할 책임 속에는 개인의 윤리적 소임과 양심의 문제도 포함되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를 불문하고 블랙리스트 수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책임자들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의 수습과정은 마땅히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술위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의 주된 관심사**라는 것을, **부릅뜬 눈들이 곳곳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르코 혁신 TF〉는 예술위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실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한 이유에 주목했습니다. 이 대목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일이 조직의 질적 변화와 비전수립의 골격을 세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예술위는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의 하부 기관이며 재정적, 행정적 지시를 받는 하청구조였습니다. 상급 기관들의 정책 방향에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는 태생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의 독립성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으로부터 출발해야 하지만 그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아르코 혁신 TF〉는 예술위가 상급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 받는 근원적 문제를 혁신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급부처와 수평적으로 협의하여 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예산과 사업이 독립된 기관으로 전환하는 질적 변화를 구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사업기획과 심의과정에 자율적 의지를 가진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웠고 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술위 위원들을 추천하는 과정이 예술현장과 유리되어 있었고, 소위원회가 예술위원 중심으로만 작동하였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부당한 개입에 저항할 민간 주체가 없었다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아르고 혁신 TF>는 소위원회 기능을 복원하거나 재구성하고, ‘현장소통 소위원회’ 등 역할별 소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것을 적극 제안했습니다. 일례로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현장의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창구 격으로 예술 지원정책의 수렴과 평가와 개선을 의제로 다루게 됩니다. 예술위의 혁신방향이 예술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담보하는 일선 기구로서 각종 소위원회의 혁신과 안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셋째로 예술위가 지녀야 할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는 필수입니다. 직원들이 예술현장과 친밀하게 교류하며 전문적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선순환적 인사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현장의 융합과 장르의 다양성에 발 맞춰 폐쇄적인 장르적 사고틀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실험적인 새로운 장르를 이끌어 내거나 신진 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아르고 혁신 TF>는 예술영역의 다양성을 확장 수용하고, 나아가 신진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복돋는 사업에 예술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넷째는 창작예산의 부족과 수용사업 예산과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창작 없이 향유 없다!’는 예술 본연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창작지원에 대한 예산은 빈약했고, 그에 비해 수용사업 예산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예산이 사업의 위상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라 한다면 창작지원 예산과 수용사업 예산의 합리적 배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창작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재분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원 심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 절차와 집행 및 정산절차를 간소하게 조정하는 등 집행자 중심에서 지원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다섯째, 지역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지원 기구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과 결연하여 정보교류나 예술적 상승효과를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

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예술위가 명실상부한 전국적 예술 지원기구로서 지역문화예술 단위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크게 조직과 사업 영역으로 분류하여 세부적인 과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예술행정의 개혁과 변화는 예술위 뿐 아니라 수많은 문화예술인과 수용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과 변화의 주문은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의 법적 권한을 지닌 **문체부와 기재부가 예술에 대한 관용(tolerance)과 이해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궁극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라는 예술위의 설립목적이 흔들림 없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예술 본연의 생리를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양’과 ‘속도’라는 성과적 계량의 잣대로 바라보는 관점을 벗어나 삶의 ‘질’과 ‘향기’라는 열린 시선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문화예술이 결과적으로 획득하는 것은 정서적 공감, 가치적 공감입니다. 다른 것들, 낯선 것들에 대한 심미적 관용일 것입니다. 독창성과 파격이 지닌 의의와 가능성이 예술의 매혹임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의 상상력이 바뀌고 철학적, 문화적 인식이 바뀌고 사회가 바뀐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명의 예술가가 탄생하기까지 무수하고 지난한 실패가 일어납니다. 예술가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을 예술인답게 신뢰의 대상으로 관계 맺는 예술위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는 예술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적용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짧은 기간에 <아르코 혁신 TF>가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바꾸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애써 쌓아온 좋은 사업들이 정치권력의 만행에 의해 무산되고 기형화 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 보고서가 예술행정의 민주성을 고양하고 문화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하기를, 예술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기쁨진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창작을 위한 번민과 창작을 위한 현실노동에서 고생이 많으실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환경의 실질적 개선뿐 아니라 문화예술인으로서의 긍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와 예술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무참하게 짓밟히고 고통받았던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변화요구를 화려한 수사(修辭)의 미봉책으로 거듬거듬 정리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술위가 지나간 과오를 통절하게 반성하고 바로잡아 예술의 가치를 드높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예술현장의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끝 -

## 제 2장: 블랙리스트 이후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절. 모든 것은 블랙리스트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

### - <아르코 혁신 TF> 민간위원들의 전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작동시킨,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고발하거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사건은 77건에 달한다. 77건은 지원사업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피해를 본 예술인 명단을 하나씩 나열한다면 수백 명을 넘어설 것이다. 미처 조사신청을 하지 못한 예술인들까지 포함한다면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 아직 이의 제기와 소명 절차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는 법률적 다툼 이전에 실제적인 진실로서 이 사건들을 바라본다. 이 사건은 국가 기관에 의해 일어난 명백한 범죄이며, 그 피해자가 순수한 예술인들과 시민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예술위 블랙리스트 관련 사업 현황, 2018년 5월 현재 진상조사위 자료>

※ 이 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서 법원 판결문과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피해자 중 극히 일부는 예술위 심의 초기 단계에서 배제 요청 없이 자동 탈락한 경우도 있어 보이나 블랙리스트로서 검증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라 할 수 있으므로 진상조사위가 제공한 표를 그대로 제시한다.

순번	사건명	사건시기	지원사업명	피해자
1	국립중앙극장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2015	2015 국립무용단 <향연>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3	지역문화재단	충북 민예총, 김정현, 윤한술, 홍성담 등

순번	사건명	사건시기	지원사업명	피해자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4	책임심의위원 선정	황현산 등 19명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4	아코대학로 예술극장 정기대관	김미도 등 심의위원 3인, 서울연극협회 등 19개 단체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4	2015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극단 허리 등 약 29개 단체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4 2015	다원예술창작지원	안산순례길 등 11명 (개)예술인 혹은 단체)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4 2015	민간국제예술교류 지원-1차	극단 골목길 등 약 12개 단체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이지호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관광)공연예술행사 지원 일반공모	(사)예술공장 두레 등 9개 단체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창작뮤지컬육성지원 (시범공연-일반)	조이피플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창작뮤지컬육성지원 (시범공연-청소년)	조은컴퍼니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 (연극-시범공연)	(사)예술공장 두레 등 13개 단체
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지원	전문예술단체 극단새벽
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체육)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1차	김경미, 김민정, 김정숙
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4 2015	공연예술비평연구 활성화지원	1개 단체 (서울변방연극제)
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문학창작공간지원	OOO(OO)



순번	사건명	사건시기	지원사업명	피해자
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4 2015	국제교류중기기획 프로젝트지원	1개 단체(극단 하땅세)
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문학행사및연구 지원	(주)실천문학 등 8개 단체
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우수문예지 아카이빙 구축 1,2차 사업	오늘의 비평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우수문예지발간 지원	약 9건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4 2015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참가지원	1명(윤한솔)
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사업(AYAF) -공연예술	3명
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사업(AYAF)-문학	심의위원 9인, 예술인 4인
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	약 12개 단체
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연극-우수 작품재공연)	조은컴퍼니 등 3개 단체
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서울국제공연 예술제	조형준 등 3인
27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민간국제예술교류 지원-2차(해외레지던 스프로그램참가지원 -2차 포함)	약 28명(개) 예술인(단체)
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공연기획및경영전문 인력지원	약 11개 단체
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대학로예술극장 3관 대관	극단 산수유 등 4개 단체

순번	사건명	사건시기	지원사업명	피해자
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약 92명
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체육)2015 문화전문인력양성 및 배치사업-민간단체지원	(사)예술공장 두레
32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추경)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약 13개 단체
3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2016	(국고,추경)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확인 안 됨
34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공원은 공연중 10월 프로그램 팝업씨어터	전진모, 김정, 윤혜숙, 송정안
35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체육)공연예술 발표공간 지원	약 25개 단체
36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김학원 등 8명
37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인생나눔교실	남상순
38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창작뮤지컬육성 지원(대본공모)	(사)문화창작집단공터다 등 심의위원 및 신청자 13인
39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지역대표공연 예술제	이종호 등 9명
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대본공모)	박상현 등 심의위원 및 신청자 22인
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2016	문화예술기관연수 단원지원	(사)한국전통문화예술원 등 최소 8개 단체(숫자 확인 불가)
42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약 27명

순번	사건명	사건시기	지원사업명	피해자
4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5 2016	국제예술교류지원 -1차	화성 열린문화터 등 약 7명(숫자 확인 불가)
44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2016 공연장 정기대관 공모	극단 허리 등 (숫자 확인 불가)
45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공연예술행사지원 (일반공모)	약 6개 단체
46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약 27개 단체
47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원로연극제	천승세
48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공연예술비평연구 활성화지원	공연과이론을위한연구 모임 등 3개 단체
49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연극 창작산실(일반) -시범공연	극단 백수광부 등 2개 단체
50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복권)문화사각지대 발굴프로그램	(사)마당극패우금치 등 3개 단체
5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기간문학단체지원	한국문예창작회
52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어린이청소년 연극 창작산실-시범공연	2개 단체
5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	10개 단체
54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1차)	정형탁 등 4명
55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연극 창작산실 (일반 및 어린이청소년) -우수재공연	3개 단체
56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창작뮤지컬육성(우수 재공연)	(주)뮤지컬구름빵 등 2개 단체

순번	사건명	사건시기	지원사업명	피해자
57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 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국제예술교류지원 -2차	약 14건
58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 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한-영 리서치지원	1개 단체(하땅세)
59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 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공연기획 및 경영전문 인력지원	약 29개 단체
60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 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2016 문화동반자사업	(사)충북민예총
6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 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약 18개 단체
62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 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심의위원 풀 선정	약 47명
6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 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음악. 오페라창작산실 -음악(오작교프로젝 트)	성남시 등 3개 단체
64	한국문화예술위원회블랙리스트실행 을위한 지원및심사제도개편사건	2016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극단 성
65	2015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 사건	2015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약 92명
66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파행 사건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약 9건
67	김성규 등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부당배제 사건	2015	2015 주목할만한 작가상	약 27명
68	공지희 등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 배제 사건	2016	2016 국제교류공모 사업	약 7명
69	김형중 등 2016 심의위원 풀 부당 배제 사건	2016	2016 심의위원 풀 선정	약 47명
70	윤혜숙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배제 사건	2015, 2016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확인불가

순번	사건명	사건시기	지원사업명	피해자
7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문예진흥 기금 공모사업 등 ‘서울변방연극제 (임인자)’ 선정 배제 사건		다원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 비평·연구 활성화사업	서울변방연극제
72	시인 정세훈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아르고 문학 창작 기금	정세훈
73	작가 김중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2015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사업 문학분야 심사위원 배제	
7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김장언’ 선정 배제 사건	2015 2016		김장언
75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집시 시위 불참 조건부 지원 요구 사건	2010	2010년 보조금 지원	한국작가회의, 민예총대구지회
76	극작가 고연옥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아르고 문학 창작 기금	고연옥
77	작가 유영소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2016	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문학나눔 선정·보급사업 2016년 예술인복지 재단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유영소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고,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하며, 왜곡된 부분은 고쳐야 한다.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난 잘못을 판단할 때도 그러하지만 개인과 국가 간에는 이 정의를 철저히 지켜야 ‘사람다운 세상’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명백히 블랙리스트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의 실제적인 진실은 외면당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과를 변명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정의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예술인들이 문체부 장관의 사과와 예술위 위원 및 직원들의 사과에 대해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변명과 부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문체부가 발표한 새예술정책과 문화비전2030의 발표현장을 지켜 보았다. 문체부에 블랙리스트를 적극 실행한 가해자들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들이 새로운 예술정책을 실행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예술인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부터 잘하겠다고 선언하는 모양새였다. 사실상 모든 국민을 사찰하고, 수많은 예술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했던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여전히 건재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다시 질문을 던진다. 문체부는 도대체 블랙리스트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예술인들은 자신이 “블랙리스트였다”는 단순한 이야기거리로 남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뒤부터 끊임없이 요구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누가 이 일을 행했는지?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고 있을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짚어보자. 예술위의 대국민 사과 자리에서 한 연극인은 연극인들이 수개월 동안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농성장을 차리고 서울연극제 아르고 예술극장 대관 배제에 대한 예술위의 잘못을 따질 때, 농성장을 찾은 그 사태의 책임자들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 사실은 예술위가 예술가들의 동반자임을 자처해왔음에도 최소한의 동료애조차 없었음을 드러낸다. 예술과 예술인을 위하는 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을 운영하는 민간 관장에게 블랙리스트의 이행을 지시하고 인사과 정으로 겁박하는 잘못도 있었다. 예술위에도 블랙리스트를 작동시킨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위원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제대로 따지지 못한 채 이루어진 사과는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문체부를 비롯하여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예술위와 여타 산하기관들도 더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청한다.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정농단에 관련한 문화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을 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직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쇄신해야 합니다.”고 일갈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블랙리스트를 진두지휘하며 실행했던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가며 여전히 문체부에 남아 있는 적폐를 해결

하기 바란다. 잘못된 사람은 벌을 받고, 불의를 정의롭게 바로잡아야 함에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기 바란다. 블랙리스트는 분명한 실체를 가진 범죄 행위였으므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마땅히 배상할지도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이것이 문체부 개혁의 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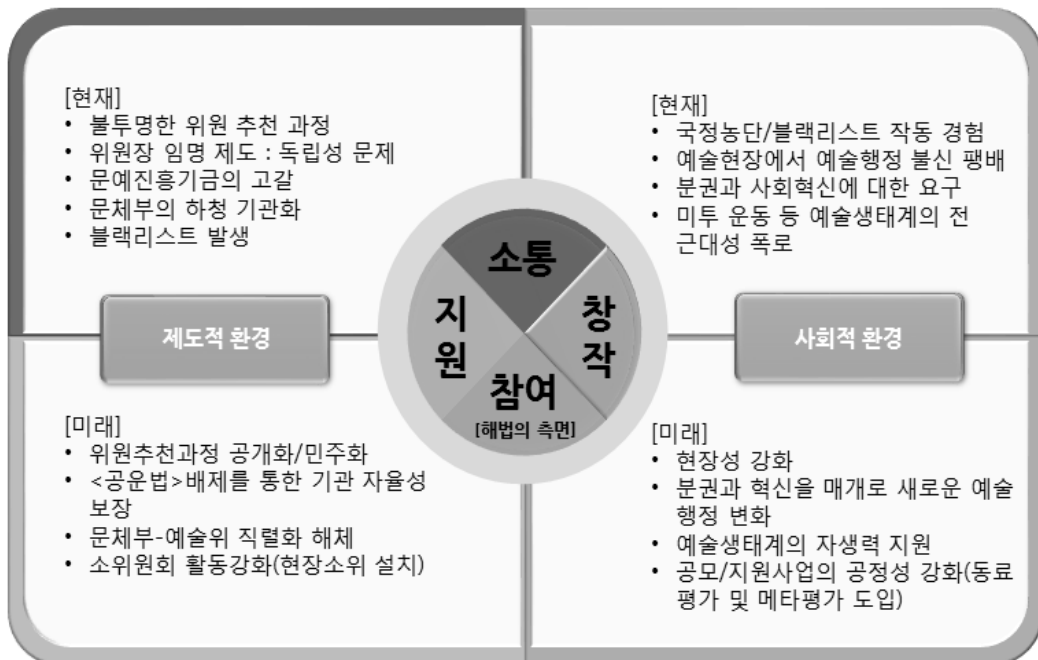
또한 예술위에도 요청한다. 블랙리스트의 실행의 책임자인 사무처장을 징계하고, 그 아래 직원들의 실행 행위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수준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 사태를 계기로 예술위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예술인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 예술위가 벌이는 사업과 행정의 기초는 전적으로 예술인들에 기반하며 예술인들이 외면하는 사업은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 예술위가 하루 빨리 예술인들의 신뢰와 애정을 회복하기 바란다.

이상 <아르코 혁신 TF> 민간위원

김미도, 김상철, 김진하, 김하은, 문동만, 민정연

## 2절. 우리는 언제나 블랙리스트가 현재의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붕괴했습니다. 과거 독임제의 구조인 진흥원에서 합의제 구조인 위원회로 바뀌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운영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문체부에 예속된 위원장 및 위원들의 인사권과 문예기금의 예산편성권, 빈번한 기관 간 분리와 통합, 예술위 본원의 지방이전,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권력과는 더욱 가까워지면서 예술현장과는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문체부로부터 예술위로, 상명하복식으로 하달되는 정책 생성과 추진과정은 블랙리스트에 저항하기는커녕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권위를 가져야할 대표적 예술기구로서의 예술위는 정작 권위의 근원인 현장 예술인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작동되는 동안 거리로 나선 예술인들과 함께 하지 못했고, 엄동설한의 광장에서 펼쳐지는 저항의 예술에도 전혀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혁신은 과거의 것을 닦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과감하게 무두질을 해서 껍질을 벗겨내고 조직을 갈라내는 것을 뜻합니다. 닦아 세우는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TF가 진단한 예술위의 과제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지향하고, 마무리가 아니라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예술현장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위원회 선임구조, 의구심이 앞서는 각종 지원과 심사 과정은 단순히 몇 가지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극복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예술을 문화진흥의 도구로 삼고 있는 문화관료 체제에 저항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예술인들의 믿음직한 진지로서 예술위가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술 현장의 지지와 신뢰 회복입니다. 예술위의 혁신은 다음과 같은 상황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블랙리스트를 작동시킨 예술기구로서 예술위의 혁신은 지속적인 장기 과정이어야 합니다. 한 번의 사과나 혁신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 자체가 블랙리스트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예술정책은 예술인을 하나의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예술인 개개인을 하나의 독립적인 대상으로, 예술위와 대등한 수십만 명의 예술기구로서 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침과 지시가 아니라 소통과 대화가 예술정책의 본질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혁신을 위한 과제는 가장 구체적인 방안이어야 하고 당장 불가능하더라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이어야 합니다. 예술의 창작이 그러하듯이 예술위의 혁신 역시 근시안적인 태도를 넘어서는 담대함과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과단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TF는 다음과 같은 혁신의 조건을 제안합니다.

첫째, 문체부 장관은 공동위원장으로 자리해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체부 조직개혁을 통한 소속기관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 개선 권고 및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등의 예술위 개선 권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실

행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문체부가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을 수용하지 못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국가예술위의 설립이 어렵다면 블랙리스트 실행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예술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가예술위원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높일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둘째, 문체부는 지난 5월16일 「문화비전2030 및 새예술정책 발표」에서 예술정책실장이 밝힌 바와 같이 예술위의 혁신안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이 혁신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인적 청산을 비롯해 스스로 문화예술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예술위는 모든 관행과 기득권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갱신하고 새로운 혁신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과하고 또 사과하면서 얼어붙은 예술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넷째, 예술인들은 미완의 혁신안을 제대로 완성하고 실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요구하고 개입하면서 스스로 예술정책의 주체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술인들의 침묵은 익숙한 기득권이 다시 우리를 대표하도록 할 것이고,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의 작동이 재연되도록 할 것입니다. 행정의 편의주의가 예술의 창조성을 흠쳐가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르코 혁신TF 위원들은 혁신안의 관철을 위해 과거의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어제의 결정이 오늘 의심 없이 실행되지 않도록 지켜볼 것입니다. 여기에 담고 있는 혁신의 과제들은 ‘지금-여기’의 고민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고작 출발점일 뿐이고 전체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간절히 호소하건데 함께 해주십시오. 이 사소한 혁신의 과제들로부터 예술위가 다시 예술인의 광장에 놓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 3장: 혁신 제안의 내용

〈아르고 혁신 TF〉는 예술위의 혁신을 위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실행분과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예술위가 법제도적 내지는 실질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조직 차원의 문제를 진단하고 혁신방안을 찾기 위한 조직혁신분과와, 다양한 사업 내용과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현장 중심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안하기 위한 사업혁신분과가 그것입니다.

두 개의 혁신분과는 각각 위원회 구성 절차의 개선, 소위원회 등 소통활성화 및 국민참여 확대방안의 내용과 참여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및 정책과정의 투명성 증대, 지원사업 분석 및 개편을 통한 예술위 역할 정립의 내용을 중범위 과제로 설정하고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각각의 혁신방안은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이어진 다양한 현장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보완하고 새롭게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현장 소통 현황 및 결과〉

일자	대상	주요 논의 사항
2018. 2. 6.	박○○(1기 위원) 노○○(전문가)	- 1기 예술위 소위원회 평가 - 기관 혁신 방향
2018. 3. 15.	김○○(시인), 노○○(연극평론) 박○○(연출), 홍○○(비평지 발행인), 정○○(공연), 오○○(다원예술)	- 기존 사업평가 및 개선 논의 - 기관 혁신 방향
2018. 5. 2.	김○○(대안문화), 김○○(작가) 김○○(음악), 서○○(도서출판) 하○○(지역협회 관계자)	- 지역문화예술 발전 방안과 예술위 원회의 역할
2018. 5. 4.	최○○(새예술정책 TF 분과위원)	- 예술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분 과의견 공유
2018. 5. 8.	예술위(나주) 임직원 전체 / 직원(간부제외) / 여성직원	- 사업 개선 방안 - 기관 혁신 방향

일자	대상	주요 논의 사항
2018. 5. 9.	예술위 노동조합	- 기관 혁신 방향
2018. 5. 15.	예술위(서울) 임직원	- 사업 개선 방안 - 기관 혁신 방향

이를 바탕으로 조직혁신 분야의 10개 과제와 사업혁신 분야의 13개 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안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혁신 제안의 내용이 마련되었습니다.

- 혁신제안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예술위이지만, 실질적인 혁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체부이기도 하며 대한민국 정부이기도 합니다.
- 사태의 원인이 구조적이기도하고 현상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법의 범위와 내용도 단기적이기도 하고 장기적이기도 합니다.
-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단기간에 혁신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유일한 해법이 아니며 후속과정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I. 조직분야 혁신 의제: 총 10가지

\* 조직분야 혁신의제는 <아르코 혁신 TF>에서 바라본 예술위가 혁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주요 쟁점의 중요도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크게 5가지로 (1) 예술위의 자율성과 독립성(과제 1, 2), (2) 현장으로부터의 신뢰 회복(과제 3, 4, 5, 6), (3) 분권(과제 7, 8) (4) 협치(과제 9), (5) 혁신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혁신(과제 10)이며, 각 쟁점에 따른 혁신의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조직혁신의 분야 장기과제

## 1. 예술위를 국가예술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대상: 청와대, 문체부, 기재부, 국회

### 진 단

#### ○ 예술위 위원장위원 인사권의 문체부 예속

- 위원장·위원 임명추천위원회 구성 권한 및 위원장위원 선정 과정에서 독립성 침해 요소 높음

문체부는 「정부조직법」제35조, 「문화예술진흥법」제23조, 제24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4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예술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등을 위촉하고, 문예기금 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는 것 등을 통해 예술위원회를 지도·감독함

#### ○ 예산편성권 부재

- 문체부, 기재부, 국회로부터 하달된 예산안에 대해 위원회는 거수기 역할에 그침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인 2019년 문예기금운용계획 수립시에도 「문체부의 예술위 사무처 하달 → 예술위 위원 의결」의 하향식 구조는 바뀌지 않음

「문화예술진흥법」제16조 등과 문예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8조 등에 따르면 예술위원회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구성된 문예기금을 독립된 회계로 별도 운용·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4조 ②항과 ③항에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문체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 문체부의 관리감독 아래 있음

#### ○ 문체부의 관료적 업무구조와 예술위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의 부정합

- 문체부 직제 시행규칙 상 예술정책과의 담당업무는 현장예술인들의 합의제 기구인 예술위를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명시, 과거 진흥원처럼 단순 기능적 문예기금배분 기관에서 벗어나지 못함
- 예술인이 정책을 설계하는 민간자율기구라는 위원회 설립취지와 배치됨

## 제안

- 문체부의 예술정책 기능을 현장예술인이 참여결정하는 <국가예술위원회>로 이관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단위 예술행정과 지원체계의 자율성·독립성을 법제도화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요 예술지원기관 → 국가예술위원회
- 예술현장 전문가가 예술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합의 구조로 설계
  - 현행 15명인 예술위 위원규모를 지역별/장르별/분야별 위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들의 투표를 통해 의결 권한을 지닌 대위원과 위원장(기관장) 선출

조직혁신의 분야 단기과제

## 2. 예술위를 「공운법」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대상: 문체부, 기재부, 국회

### 진 단

- 예술위는 2005년 현장중심의 합의회 기구로서 예술지원 정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표방하며 출범하였으나,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근거하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됨
- 동법 제3조에서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선언은 존재하나 구체적인 장치는 전무함. 위원장과 감사의 임면, 예산의 편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예술위 위원장 및 상임감사 임명(공운법 제26조), 상임감사평가(제36조), 경영평가(제48조), 조직운영 및 정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공운법 제50조), 공공기관 기능조정(공운법 제14조)
- 동법의 적용으로 예술위 설립취지와 달리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해 경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여러 제도들을 준수해야 하고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계량실적 달성의 성과지향적 사업 운영으로 인한 현장과의 괴리 발생**(단년도 평가, 작품 수, 관객 수 등을 우선하고 현장조사, 예술계 소통, 실험적 예술 지원 등은 등한시)

### 제 안

- 현행 「공운법」상 KBS 등 방송사에 준하는 위상으로 현행 ‘기금운영 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등에서 대상 제외 기관으로 지정



〈참고. 2007. 12. 4 개정〉 「공운법」 제4조 제2항 3호 신설 이유(본문 발췌)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설치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에도 이 법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공영방송제도 존립의 근본적 전제이자 방송법의 목적으로 명시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제외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단기적으로는 법률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공운법 제4조)을 통해 예술위의 독립성 보장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는 국가예술위원회에 준하는 기관의 위상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문화기본법」상의 기구로서 국가기구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 그리고 재원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함
- ※ 단, 공운법 제외는 문예진흥법 개정(문체부 협조요)과 공운법 개정(기재부 협조요)이 필수사항으로 문체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가능함

조직혁신의 분야
<b>3.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예술위로 이관하고 위원장 호선제를 실시하여 예술위 위원 구성의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b>
제안 대상: 문체부

**진 단**

- 현행 예술위 비상임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 등 「문화예술진흥법」의 절차에 따라 구성됨. 예술위 위원은 어느 정도 장르별 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추천위원회의 장르별 위원들의 추천을 통해서 구성하려는 취지이나, **현재 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은 공모지원자 중에 심의해서 0배수를 추천하는 역할일 뿐 추천기능은 없음**
- **현장성과 참여확대라는 취지를 볼 때 위원추천위원회에 의한 예술위 위원 구성 절차는 현장과의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성별, 세대별 균형 등의 안배가 미흡**
  - \* 예) 2,3,4차 위원추천위원회는 동법 시행령 제 28조 2항 각호 필수 고려사항 미충족
  - 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위원 공모 과정에서 접수된 후보자들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예술계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서 한계가 매우 큼
- 예술위 위원장은 2005년 민간 자율의 합의제 행정기구의 취지에 따라 호선제로 선출되었으나, 2008년 「공운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자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 문예진흥법 상 예술위원회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법제도적 모순 발생
  - 현장 예술인들의 참여와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당초 설립 취지에 반함
  - **정부의 의지와 선택에 따른 정책방향의 유동성 강화 → 예술위의 자율성 약화**  
→ **지 난 박근혜 정권에 블랙리스트 집행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주요 원인**
- 국정과제로 논의되는 호선제 역시 위원추천위원회 주도의 예술위 위원 구성절차 개선 없이는 실효성 없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큼

## 제안

-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예술위 위원 구성절차에 대해 개방성, 현장성, 민주성을 강화하여 참여적 구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위원 선임과정이 현장으로부터 추대되는 절차를 중심으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
- 단기적으로 **현행 문체부의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예술위에 ‘위임’하고 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공모와 심사과정을 공개하여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보장**
  - 타천 방식을 적극 활용하되 각 위원들의 활동계획을 공개적으로 공표하게 하여 활동 기반형 책임구조로 운영되도록 함
- 장기적으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예술위로 이관**하고, 예술위는 해당 시행령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한편,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위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예술인들이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
- 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해 10명 이상의 추천인 명부를 받거나 현장의 다양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체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추천방식 운영의 정교화 필요. 예를 들어 단체 소속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최소인원(10명 이상)으로 하되 후보자와 추천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천자는 중복해서 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예술위 위원구성의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위원장 호선제 제도화를 병행**(「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제2항 개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 24조 제2항에 규정된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를 위원 중 호선으로 개정

### 〈참고 1〉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태’ 대책 발표(2017. 3. 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검열 실행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위원 및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위원장 호선제 등이 도입된다.”(동아일보, 2017. 3. 10.)

〈참고 2〉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2017. 4.)

**적폐청산 3.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습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 정부 지원기관 문화계 간 ‘공정성 협약’ 체결 추진
-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
-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 확대**
  - 기관장 선임과 예술위 위원 구성시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 보장**
- 문화 옴브즈만 제도 도입

조직혁신의 분야

**4. 다양한 예술현장의 직접 참여가 보장되는 소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대상: 예술위

**진 단**

- 예술위 1기는 장르별+기능별 소위원회를 병행했고, 이후 2기~5기 위원회는 기능별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었음(2009년 이후 기능별 소위만 운영)
- 2015년 이후 민간위원 없이 예술위 위원으로만 예술지원, 문화나눔, 예술확산, 기금운용계획 및 중장기전략 소위원회 등 4개 소위원회 운영
  - 전체 예술위 비상임 위원들로는 관장할 수 없는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이나
  - 실용적인 정책개발과 집행 등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되었던 소위원회 제도 취지에 반함
- 소위원회의 최종의사결정권이 없는 정책자문 역할로 제한되었음

**제 안**

- 소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를 활성화하여 지원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예술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설계 기반을 조성함→예술위 사업구조의 현장성과 정책 정당성 확보 및 정책결정 기능을 지원
  - 단기적으로는 현장소통과 예술현장의 의제를 공론화하여 제도적 해결을 피하는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 장기적으로는 소위원회가 지역별/장르별/분야별 예술현장의 예술인들로 구성된 ‘예술의회’로서 기능하도록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토대가 되도록 개선함

- 장르별 소위원회 대신 현장 흐름에 변동 가능한 유연한 소통구조로 소위원회를 운영함.  
특정 장르별 의견 또는 특정 이슈에 대해 현장 공론화가 필요할 경우 장르분과, 공론화  
분과(토론회, 포럼)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
- 예술현장의 창구역할로서 외부인사 참여 활성화와 폭넓은 소통의 장을 구성한다는 취지  
에 맞춰 지역예술인, 여성, 세대 등 다양한 관점을 아우르는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함  
→ 증기적으로 전체 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 소위원회 전체 외부위원 비율을 적어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함

조직혁신의 분야

**5. 예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개방직 직위를 도입  
운영하여 예술위 행정의 질적인 변화를 제안합니다.**

제안 대상: 예술위

**진 단**

- 예술위 사업은 예술지원 행정의 전문성과 예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사업부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아르고 미술관, 극장, 자료원 등 예술위 운영시설은 특히 현장 요구에 맞도록 예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
  - 시설운영 정책 일관성 미흡 : 극장, 자료원 등 예술위 소관 운영시설은 전문성을 이유로 2010년 문체부에 의해 분리되었다가, 시너지 제고를 이유로 2014년 문체부에 의해 다시 예술위와 통합되는 등 조직운영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했음. 이 역시 운영 시설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동

**제 안**

- 주요한 지원사업 중 예술인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개방직 직위로 전환하여 현장 예술인이 담당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을 통한 예술행정의 가능성을 구축
  - 단기적으로 예술위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극장 등 운영시설에 대해 예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하고, 위탁업무의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예술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예술인 일자리로 운영함
    - 미술관 관장, 극장장, 기획제작, 예술감독 등 전문인력에 대한 직무공모제 강화를 통해 특색 있는 시설운영 기반 마련

- 장기적으로는 예술인 당사자의 예술행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위 위원 중 일부 상근직이 될 수 있는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함
- 지원 사업과 공간 활용의 연계 등 예술위 시설로서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



조직혁신의 분야
<b>6. 공모 및 지원사업 과정에서 예술인/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예술인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현장의 대변자로서 예술위 역할 강화를 제안합니다.</b>
제안 대상: 예술위

**진 단**

- 예술위의 역할정립은 개방성, 현장성, 신뢰성에 근거한 현장 소통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와야 함. 그 간 예술위 사업은 예술인과 국민이라는 정책대상과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정책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구조 마련이 미흡했음.
  -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도 지원사업 과정이 공유되지 않은 채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 지원사업 수행과정은 예술인을 사업의 주체가 아닌 지원대상으로만 인식하여 지원사업 전반의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미흡했음
- 단순 사업관리가 아닌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창작활동 과정, 기타 고충상담 등의 고민을 담아내고 예술가들을 응원할 수 있는 현장의 대변자로서 역할이 필요함

**제 안**

- 단기적으로 지원 공모사업과 함께 각종 공공계약 과정에서 예술인이 겪는 일반 행정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컨설팅 기능과 지원사업 수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예술인 옴부즈만 제도” 신설(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 중 “문화 옴부즈만 제도 도입”)
  - 계약, 정산 등 창작활동 과정에서의 지원컨설팅 지원 강화

- 기타 예술인들의 고충, 애로 등을 상담지원 기능 확대 : 폭력예방전문가가 되길 희망하는 예술인 교육개설, 예술계에서 이슈화되는 분야의 전문가 교육과정 등 무료배움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의
- 장기적으로 공모/지원사업의 심사와 평가과정 사이에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과정의 모니터링을 실시
  - 현행 「국민권익위법」에 따라 각급 정부기관에서 설치 운영 중인 옴부즈만 제도를 차용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지니고 모니터 대상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참여하는 “예술인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
  - 모든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실명제를 강화하여 사업의 책임과 집행 담당자가 사업 전 과정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함

조직혁신의 분야
<b>7. 문체부와 예술위 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제도화하여 예술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b>
제안 대상: 문체부, 예술위

**진 단**

- 2005년 예술위 설립시 논의되었던 당초의 문체부와 예술위 간의 역할정립과 달리 지난 10년간 양자 간의 역할 정립 자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철저한 상명하복 관계로 시스템화 되었음

2004년 <새예술정책>에 제시된 문체부와 예술위원회 역할분담 방안

	문체부(문예진흥원)	예술위
체제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결정과 집행</li> <li>○ 현실변화를 수용못하는 장르별 예술국 직제 및 기능</li> <li>○ 문예진흥원 역할의 한계 : 단순 기금이나 예산의 관리 배분의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가차원의 민간자율기구</li> <li>○ 정부문화예술정책과 연계한 지원정책의 추진</li> <li>○ 민간자율적인 정책의제설정 및 민주적 참여보장, 전문성 확보</li> </ul>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단위의 정책형성 및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중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정책업무 총괄 : 예술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예술정책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하는 구조 형성</li> </ul>

- 문체부 중심의 예술지원 사업 운영에 따른 예술위 역할 범위 축소 및 간섭 확대
  - 문체부는 예술국의 장르별 부서 편제 속에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의제를 다루는 총괄 역할보다는 장르 내 사업 중심으로 기능이 강화됨
  - 이에 따라 장르별 부서의 사업수행을 위한 기관 설립수요가 증대되고, 결국 신규 산하기관이 계속 양산되는 결과 발생(2018년 현재 54개 산하기관)

- 예술지원체계의 복잡성, 중복성,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악순환 발생. 수많은 기능적 예산배분 기관이 크게 늘어나면서 예술위의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예술위 지원정책 결정범위는 축소되고 과거 진흥원과 같은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함
- 아울러 예술위 담당으로의 예술정책과 뿐 아니라 장르별, 사업별 관계부서에서 예술위 개별부서와 직접 업무 협의하는 관행이 자리잡으면서 블랙리스트 작동의 토대가 됨
- 위원회 체제의 장점은 살리지 못하고 단점만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예술위가 진흥원과 무엇이 다르고 왜 굳이 위원회 체제여야만 하는지에 대해 회의감 만연

## 제안

- 단기적으로 위원장 3년 임기 동안 예술위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 장관과의 자율운영 협약서를 체결하고, 문체부와의 역할정립을 마련하여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제도화함
  - 협약서 내용을 예술계에 공포하여 예측가능성과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
  - 예술위 소관 업무의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한 예술위의 자율성 보장
  - 매년 사업추진과정과 결과를 공유하여 예술계와 국민 모두가 실행계획 대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함

### 〈2018년 5월 16일, 새 예술정책에서 언급된 문체부와 예술위 협약의 내용〉

최근 발표된 새예술정책(P.19)에서는 문체부와 예술위는 협약을 체결하여 기능과 역할을 명문화하고 정책방향서 성과를 공유하여 긴밀히 협력한다고 발표한 것은 고무적이나 영국의 사례를 들어 “예술위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성과에 관한 예측 및 모니터링 정보, 재정 등에 대한 중대한 문제들을 문화부에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오히려 통제기능을 강화한다는 우려가 있음

- 장기적으로 문화부와 예술위의 업무협력과정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비공식적인 수직적 관계를 해체
  - 이를 위해 문체부는 각 문화기구와 문체부 간의 업무협조 및 협의 과정을 제도화하는 장관지침을 수립함

- 문체부와 예술위 간의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상호 공유하는 등 업무협의를 위한 공식 협의 단일 창구를 마련하여 의사결정 구조의 효율화를 높임
- 예술위는 문체부나 기타 유관기구와의 대외협력을 주관하고 업무를 분장 조정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함
- 정부, 지원기관, 문화계 간 '공정성 협약'을 체결하고 예술정책의 공정성을 보장함
  - ※ 블랙리스트가 작동했던 문체부 산하 모든 기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적인 민주적 문화예술행정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해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 시행령」에 예술위 자율성과 범위를 명시(법조문 포함)

**\* 법안예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 시행령에 예술위 자율성을 명시하는 방안**

〈법조항 추가예시〉

- (예술위 자율성 보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진흥을 직접목적으로 정책사업 수행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예시〉

- 동 법 제00조에 의한 사항에는 다음의 각호가 포함된다.
  1.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예산편성
  2.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심의계획 및 운영
  3.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지원금 배분 및 지급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조직혁신의 분야
<b>8. 문체부의 단순수탁 및 지정교부 사업을 정비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자원 확보를 제안합니다.</b>
제안 대상: 문체부, 예술위

**진 단**

- 2015년부터 최근 3개년 간 수탁사업(국고/체육기금 등) 규모가 급증하여 이에 투입되는 정규직/비정규직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
  - 2017년 사업예산 2,582억 중 16.3%인 422억 규모로 정원 195명 대비 13%인 25명 수탁사업 수행 중

〈 2017년도 수탁사업 투입 인력 및 예산 현황〉

(‘17. 6. 8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재원	사업명	‘17예산	투입인력 (파견직)	소관부서	주무과
일반 회계 (국고)	문화다양성보호 및 증진사업	2,669	1(3)	협력개발부	문화여가정책과
	여가친화기업선정·지원	90	1(1)	협력개발부	문화여가정책과
	공연연습공간조성 및 운영	5,600	2	공연지원부	공연전통예술과
	공공미술프로젝트	1,440	1(1)	시각예술부	시각예술디자인과
	미술주간행사 개최	370	1(1)	시각예술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인생나눔교실	3,300	1(12)	협력개발부	인문정신문화과
	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인문360° )	973		협력개발부	인문정신문화과
	문화가있는날	9,617	1(12)	협력개발부	문화융성위원회
	소계	24,059	8(30)	-	
체육 기금	문화가있는날 홍보마케팅지원	400	1	협력개발부	문화융성위원회
	문화동반자사업	1,145	1(1)	국제교류부	국제문화과

재원	사업명	'17예산	투입인력 (파견직)	소관부서	주무과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9,400	3(4)	평창문화올림픽TF	예술정책과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사업	630	1(1)	시각예술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예술기록관리전문가 양성 및 시스템구축	470	4(10)	예술자료원	예술정책과
	창작활성화 지원(대관료 지원)	1,500	1(2)	극장운영부	공연전통예술과
	특성화극장 육성	1,000	1	공연지원부	공연전통예술과
	공연예술유통지원	1,000	1	공연지원부	공연전통예술과
	도서관상주작가지원	1,000	1(1)	문학지원부	예술정책과
	우수문예지발간지원	500	1(1)	문학지원부	예술정책과
	작가비 지원제도	452	1(1)	시각예술부	시각예술디자인과
	문예기금 지원사업 심의·평가 개선사업	150	1	담당부서미정	예술정책과
	소계	17,647	17(21)		-
	<b>합계</b>	<b>41,706</b>	<b>25(51)</b>		-

\* 투입인력은 위원회 정원내 인력(정규+무기) 기준이며, 각 사업별로 편성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파견직 51명을(파견직현원 90명 대비 49%) 활용하여 사업 수행 중

○ 문체부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단순 재교부 사업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기금고갈 가속화의 문제 발생

- 2018년 기준 문예기금 사업의 19.8%가 지정교부 사업으로 그 중 73.5% 해당하는 33,119백만원(6개 보조사업)이 문체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단순 재교부사업

시행주체(보조사업자)	예산 (단위:백만원)	시행주체(보조사업자)	예산 (단위:백만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5,414	(사)한민족미술교류협회	40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8,813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391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6,132	(사)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367
(사)한국메세나협회	2,150	한국창작음악제추진위원회	360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1,300	(재)국악방송	300
(사)한국시립미술관협회	1,261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250
(재)예술의전당	1,260	양상블 라 메르 에 릴	250
(재)정동극장	1,200	한국오페라70주년기념사업회	200
(사)한국연극협회	1,170	사)날마다좋은날	200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전시추진단	600	대산문화재단	200
(재)전북문화관광재단	600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170
(사)한국무용협회	600	(사)대한민국 독도	100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조직위원회	500	봉은사	100
(사)한국뮤지컬협회	423	아시아아트페어운영위원회	100
(사)서울국제문화교류회	400	-	
<b>계(29개 주관단체 / 45,211 백만원)</b>			

○ 국고/기금 간 사업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수탁사업의 기준과 협의 또한 불충분

- 국고사업을 문예기금 사업으로 편성했다가 다음 해에는 다시 국고이관 후 예술위에 위탁하는 등 예술위의 설립목적과 관장 사업성격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사전 논의없이 수탁되는 경우 사례 다수 → 문예기금이라는 독립된 회계를 운영하는 민간자율기구라는 위원회 설립취지와 배치됨

\* (예시 : 공연예술연습공간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 '14년 문예기금으로 100억 신규 편성 → '15년 일반회계로 이관, 예술위 수탁으로 추진 중('15년 59억, '16년 59억, '17년 56억)



## 제안

- 단기적으로 현재 전체 예산의 1/2에 달하는 복권기금 사업과 1/4에 달하는 단순 재원 경유 사업들을 정비하여 문예진흥법 상의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이라는 사업 비중의 균형성 확보를 위해 예술위 예산에 대한 착시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위원회 정책 및 사업의 독자적인 수행 구조 마련
  - 문체부가 예술위를 경유하여 예경, 전통문화예술진흥재단, 한문연 등 유사 공공기관에 그대로 이전되는 재원은 문체부가 직접 이전하는 것이 예술위의 고유업무를 강화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임
- 문체부와 국고 및 기금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예산편성 절차 마련
  - 일반회계와 문예기금의 역할분담 기준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 절차를 별도로 확립하여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사업 추진체계를 확립
  - 문체부와 국회의 쪽지예산 대상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적립금과 예술위와 광역문화재단과의 협력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재편성
  - 현행 「국가재정법」, 「보조금법」에 따른 기금 운용주체로서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법적 한계 개선 필요
- 장기적으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타 기금 전출금이 기금 건전성에 착시를 주고 있는 상황을 개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 현행 문화기금을 통폐합하고, 예술위 계정을 설치 △ 복권기금 상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전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조직혁신의 분야

**9. 지역문화분권 시대에 맞게 지역예술 정책과 소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를 혁신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대상: 예술위

### 진 단

- 2007년 설립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이하 ‘한지협’)은 주로 사업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과 관련된 사업은 지역으로 이전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변화된 정치, 정책 지형에 맞게 새롭게 구성될 필요성이 있음
  - 예술위는 한지협 정책협력위원회(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 참여)와 사업 운영지침에 대한 협의를 통해 사업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지자체에 통보. 지자체는 해당 광역문화재단과 동 지침에 따라 사업 시행
- 한지협은 광역문화재단의 지역협력형사업에 한정하여 실무자 위주의 협의기구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역지역 문화예술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협의기구로서 한계로 인식(광역문화재단 2017년 발족)

### 제 안

- 한지협 재구성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지원정책 협의기구로의 법적 위상 확보
  - 예술위와 예술지원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전통공연예술진흥원, 장애인예술진흥원 이음, 한국문화회관연합회 등),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체제로 재구축
  - 예술정책 및 사업에 대한 중앙-지역의 정책 속의기구로 정체성 재확립

- 사업단위별 개별적 정책집행 중심의 정책전달체계에서 통합적 정책협의 채널을 마련하여 지역과의 거버넌스(협치) 체제로 재구축
- 지역분권 차원에서 예술위와 지역 간 역할정립을 통해 예술위 기능 개선 필요
  - 예술위 지역문화협력관 제도 폐지, 지역예술 협력 채널 지원 전담조직 신설
- 지역 내 문화예술지원체계는 발전 중이나 여전히 부족한 지역 간 소통,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 예술가들의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자 역할 강화
-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회혁신운동 지원
  - 지특회계 등 문화분권에 따른 지역 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문화예술지원실태 보고서>를 발행,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동기 부여 등 “예술옹호 사회혁신 운동” 지원을 강화함

조직혁신의 분야
<b>10. 혁신안의 지속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하여 예술위 사무처의 조직혁신안을 마련하고 예술위와 문체부는 관련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합니다.</b>
제안 대상: 문체부, 예술위

**진 단**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정에서 예술위는 2010년 서울 구로구 이전, 2014년 나주 이전 등 두 차례 조직 이전이라는 유례없는 외부충격이 있었음
  - 현장예술인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예술현장과의 소통은 매우 어려운 구조일 뿐 아니라 서울-나주 간 분리근무에 따른 잦은 출장 등의 피로감과 조직 내 위화감도 상당 수준으로 나타남
  - 또한 최근 5년동안 사업예산 규모가 2배 가량 증가했으나 적절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심각한 과로상태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
- 뿐만 아니라 2010년 서울 구로구 이전과 같은 시기에 예술위 부서인 자료원과 아르고극장을 문체부 주도로 각각 국립예술자료원과 한국공연예술센터로 강제 분리 당함
  - 이후 2014년 다시한번 문체부 주도로 예술현장과 예술위 위원과의 사전협의 없이 국립예술자료원과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재통합됨
  - 통합 후 직급 간 통합은 물론, 임금체계 역시 별개로 구성되어 있고 무기 계약직, 단기 계약직, 파견직 등 다양한 직군의 직무체계가 혼재되면서 12개에 달하는 내부 직군체제로 운영되는 등 수많은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5.9. 노동조합 면담)
- 예술위의 혁신안은 예술계 현장과 더불어 예술위 사무처의 강력한 자기 동기와 미션을 바탕으로 집행될 때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나 2010년 기관이 분리되고 이후 지방이전과 기관통폐합 등이 연속되면서 혁신안 집행을 위한 기관내 실행 동력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됨

## 제안

- 문체부는 문체부의 정책판단에 의해 추진된 2010년 국립예술자료원 독립, 한국공연예술센터 분리 독립 등에 대한 정책 책임을 지고 이들 기관의 예술위 통합 후 (사후적인) 제도지원, 재정지원 방안을 담은 대책을 강구
- 예술위는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예술계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민조직혁신TF를 구성하고 일차적으로 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된 2009년 이후 조직진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직무 인센티브 구조의 재설계를 추진하도록 함
  - 해당 조직혁신TF는 공동의 추천으로 전문연구기관에게 조직진단을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위 혁신안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혁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이전 이후 사무처 내 여성노동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급적 출산과 휴직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정책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조직혁신TF는 유사 기관과의 비교를 통해서 업무에 따른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문체부는 적정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함

## Ⅱ. 사업분야 혁신 의제: 총 13가지

\* 사업분야 혁신의제는 <아코 혁신 TF>에서 바라본 예술위가 혁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주요 쟁점의 중요도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크게 10가지로 (1) 현장의견 수렴 기반(과제 11), (2) 창작지원 강화(과제 12), (3) 대상별 지원체계 정립(과제 13, 14), (4) 지원분야 확대(과제 15, 16, 17), (5) 심의제도 개선(과제 18), (6) 행정절차 개선(과제 19), (7) 예술인 권리보호(과제 20), (8) 일자리 창출(과제 21), (9) 예술인 교류지원(과제 22), (10)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홍보 확대(과제 23)이며 각 쟁점에 따른 혁신의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사업혁신의 분야
<b>1. 예술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b>
제안 대상: 예술위

**진 단**

- 그 간 예술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비공개 상태였기 때문에 정작 예술인들은 예술위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지 알 수 없었음
  - 예술인들에게는 어떤 사업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느닷없이 생긴다 해도, 그 원인과 진행과정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음 → 이로 인하여 예술인들이 예술위 정책과 사업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음
- 기금 사업의 지원공모, 심의, 교부 시점이 예술현장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공연 예술의 경우 기금 사업에 선정된 작품들이 비수기에 공연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는 예산편성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문제를 불러일으킴

**제 안**

- 예술위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개방과 공유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정기간담회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예산 편성 및 사업 계획 수립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다음해 예산편성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현장 의견을 정례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공유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운영 체계를 확립함
  - 차년도 공모사업 공고를 당해연도 9월 완료 후 차년도 1월 사업시행되도록 조정

〈공모사업(지속사업) 운영주기 및 추진절차(안)〉

현장의견 수렴	사업계획(안) 소위원회 검토	사업계획 위원회 의결	공모사업 공고	신청접수/ 심의준비	지원심의	위원회 의결	사업 시행
3-5월	6-7월	8월 말	9월(9.1)	10월	11월-12월	12월 말	1월-

- 신규사업 등 현장의견 수렴을 당해연도 완료 후 차년도 1월에 반영되도록 조정

〈신규사업 운영주기 및 추진절차(안)〉

현장의견 수렴	중기재정 계획반영	사업계획(안) 소위원회 검토	사업예산(안) 위원회 의결	문화부 협의를	기재부 제출	기재부 예산협의	국회 심의의결	세부계획 수립추진
9-12월	1월	1-3월	4월	3-5월	3-6월	6-8월	9-12월	1-3월

○ 공모/지원사업별 종료시점에 공개 평가회를 제도화하여 참여예술인들의 사업평가가 공식화될 수 있도록 함

\* 현장의견 수렴→차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반영결과 공유→정책평가 및 검토 (아르코 컨퍼런스 등)→현장의견 수렴→차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혁신 분야
<b>2. 기초 예술 중심으로 지원하고, 창작지원을 우선하되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이 선순환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 사업 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b>
제안대상: 예술위

**진 단**

- 예술위가 가장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할 정책은 창작자 지원에 있음. 기초 예술이 활발하게 만들어질 때 이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일반국민의 예술을 감상하는 능력도 고양될 수 있음
- 그러나 그 간의 지원사업은 기초예술에 중심을 둔 창작지원보다 향유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측면이 많음
  - 창작과 향유를 별개로 지원하는 이원화 정책기조(지원중심의 작품과 향유중심의 작품을 따로 접근하는 문제)
  - 좋은 작품이 창작되고 지역 곳곳의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연계성 부족

**제 안**

- 예술위의 기본 정책 방향을 대중성 우선의 향유사업이 아닌 창작자 우선 지원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
  - 기초예술 중흥이 곧 훌륭한 작품의 향유 기회 확대로 연계되고, 일반시민의 예술적 감상능력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설계 제안 → 예술위가 지원한 우수작품이 전국에서 향유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여 제작환경 자체를 개편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 문예회관 순회공연 지원, 우수 소극장 운영지원, 작은 서점 지원(작가가 함께 하는 문학공동체 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공연, 문학/아르고창작기금 작품발간 작가와 대중

과의 만남 등)

- 세분화된 지원사업의 카테고리를 가능한 한 통폐합시켜 우수 작품에 대한 창작지원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제안
  - 1차 우수작품지원(가칭)의 풀을 확대한 후, 2차적으로 향유사업 및 국제교류 사업과 연계, 2회까지 중복지원 가능하도록 제안
  - 2차 지원단계에서는 지원서류 최소화를 제안
- 궁극적으로 예술가는 좋은 작품을 창작하는 데만 몰두할 수 있는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작품은 지속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지원 방향 제안
  - 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 강화 : 홍보, 마케팅, 작품 비평, 유통 관련 지원을 통한 관객 확보 지원

사업혁신의 분야
<b>3. 신진예술인이 도전할 기회에 대한 지원이 많아져야 합니다. 최초 지원은 제안서만으로 심사하고 이후 사후평가를 통해 다단계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b>
제안 대상: 예술위

**진 단**

- 예술가의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가 부족함. 예술가 자신이 어떤 지원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없음
  - 신진-중견-원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부재 : 신진으로서는 성장단계별 지원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고, 국가적인 예술가가 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릴 수 없음
- 신생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진입 장벽이 높고, 기존에 기금 지원을 받았던 단체가 계속 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으로 신생단체가 지원받기 어려움
  - 지금까지는 신진 예술인, 중견 예술인, 원로 예술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한데 묶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진 예술인들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음

**제 안**

- 신진예술인들이 새로운 창작실험에 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듭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최초)지원제도를 제안
  - 나이, 전공, 경력 등 자격 제한 없이 제안서와 인터뷰를 통해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의 폭을 확대함→최초 지원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신진 활동 기간 내 최대 3회 정도까지 지원 받고 지원금 규모도 점증 가능하도록 설계함

- 평론가집단 등을 활용하여 별도의 지원 신청 없이도 우수한 신진 작품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안

〈지원사업 예시〉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 신진지원사업, 중견지원사업, 원로지원사업 등**
  - 예) 신진 : 최초지원(소액다건, 기획안 심의 또는 인터뷰)→2차 지원(증액)  
→3차 지원(증액) 방식
  - 중견 : 사후지원, 집중지원, 다년간 지원, 수시 사후평가 시스템 정비,  
검증방식 다변화
  - 원로 : 원로가 포함된 단체의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도입
- **개별 지원사업 목적에 따른 지원자격 기준 완화**
- **신생예술단체 지원사업 마련 : 신생예술단체 대상을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사업 마련**

사업혁신의 분야
<b>4. 중견 및 원로 예술인들에게는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지원하되 탁월한 예술인과 단체의 경우 다년간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b>
제안 대상: 예술위

**진 단**

- 창작지원은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성취에 대한 평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의 탁월함 대신 수혜예술인의 형평성만을 고려하는 공급자 중심의 예술지원 정책이 지속되어 있음. 기존 지원제도는 특정한 시기에 지원금이 예술인들에게 소액으로 분배되는 방식이어서 예술창작의 탁월함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지원책 부재
- 현행 예술위 창작지원은 지원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보다는 대상을 포괄하는 사업이 많음
  - 특히, 중견 예술인에 대해선 창작 숙련정도를 고려하지 못한 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원로 예술인에 대해서는 관행적이고 중복적인 지원을 진행함으로써 세대 간 지원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되어 왔음
- 또한 1년 주기의 공모 심의기준에 부합하는 창작 준비방식으로 예술단체 운영이 고착되면서 중장기적 관점의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단체의 시도는 매우 어려워짐

**제 안**

- 중견 및 원로 예술인들에게는 사후평가를 강화하되 지원금의 폭을 상대적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인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안
  -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예술인들의 창작 생애주기에 맞도록 변경하고 적절한 규모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 과정에서 중견 및 원로 예술인의 예술적 성취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지니도록 적극적인 향유 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예술 생태계에 맞는 사후 평가가 되도록 유도함
- 탁월한 예술작업을 수행한 경우, 다년간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작업환경이 제공 되도록 제안
- **현행 단년 사업비 지원중심에서 벗어나 다년 예술단체 운영비 포함 지원사업을 신설, 중장기적 관점의 새롭고 실험적인 창작 활성화와 안정적 관리역량을 제고함**

사업혁신의 분야
<b>5. 예술의 다양성을 위해 다원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b>
제안 대상: 예술위, 문체부

**진 단**

- 예술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2000년대 중후반에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다원예술의 활성화를 꾀하던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지원영역에서 배제됨
- 기존의 예술 언어로는 명료하게 설명하기 힘든 다원예술의 특징을 새로운 예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호한 예술영역으로 치부하며 지원영역에서 배제되었음
- 다원예술의 예술계 진입이 어려워서 예술적 상상력을 제한하고 예술현장의 역동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제 안**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담은 예술창작활동을 일컫는 다원예술 지원체계 복원이 필요함
- ‘이것이 다원예술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다원예술이 아님.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다원예술의 속성을 이해하고 예술현장과 예술행정가의 소통을 통해 예술현장의 변화와 역동성을 적극 반영한 현재진행형의 다원예술 개념을 만들어 가는 소통체계가 필요함
- 지원사업 내에 창작활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의 다원예술 사업공모를 지양하고 예술가들의 자유제안을 상시화하여 지원하는 사업방식 도입
  - 기존의 전통적인 장르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개발하여 운영

- 장르의 융복합실험과 실험적 예술활동 지원사업 강화(창작실험 활동 지원 확대 등)
- 다양한 가치를 담은 비주류예술, 독립예술, 창의적인 대안예술, 공공성을 지향하는 예술 등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 다원예술의 특성상 타 장르에 비해 기획력이 작용하는 사례가 많음에 주목하여 예술가의 상상력을 공유하고 기획할 수 있는 기획전문인력 양성 체계 조성을 제안



사업혁신의 분야
<b>6. 미래의 예술가인 어린이 청소년 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를 제안합니다.</b>
제안 대상: 예술위

**진 단**

-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을 경험하여야 우리 사회의 예술이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이 매우 부족한 실정
  -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예술은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부터 예술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지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용처에 제한이 있어 예술경험기회 확대에 어려움 많음

**제 안**

- 어린이, 청소년 대상 창작활동 지원 확대
  -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가들이 벌이는 여러 창작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술을 마중물로 삼아 풍요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
- 어린이, 청소년 대상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확대 및 보급 연계 : 문학, 시각, 공연 분야 집중 육성
  - (문학 예시) 그림책 등 영·유아기부터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주목해야 함.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작품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문학 작품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함
  - (시각 예시) :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각 예술과 전시 등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 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이를 통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

에게 시각 예술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삶에서 예술을 가깝게 느끼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공연 예시) :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에 지원을 확대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부터 공연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나이에 따라 느끼는 고민과 감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령대가 선택할 수 있는 공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함
-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초 예술에 접근할 문턱을 더 낮추어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

사업혁신의 분야
<b>7. 예술담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비평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b>
제안 대상: 예술위

**진 단**

- 예술은 적극적인 사회적 비평과정을 통해서 평가되고 사회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에 대한 육성정책이 부족했으며, 그러다 보니 행정의 지원 과정에서 진행되는 심사과정이 예술 비평을 대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짐
- 그동안 비평지원은 주로 연구서적, 정기간행물, 학술행사 지원 등으로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비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창작활동에 대한 평가는 행정적 관점에서의 단순 평가가 아니라 비평을 활성화하여 창작자와 향유자가 교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전문가들의 비평 외에 전문 관객 등 시민들의 비평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부재

**제 안**

- 전문가들이 비평하는 활동에 지원을 확대하여 창작활동에 대한 건전한 담론의 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비평활동 지원(예시) : 비평고료 지원 확대, 매체 환경 다변화를 반영한 비평 지원 사업 다각화, 비평사전 연구지원, 전문 비평지 발간을 위한 인건비 지원, 비영리 비평전문잡지 발간비 지원 등
- 예술계와 일반시민 간의 교감 확대, 지속적인 향유자창작매개자 개발을 위해 전문 관객들이 작품에 대해 비평하는 사업 지원
  - 관객 비평교육과정 신설 및 관객 동호회 활동 지원, 전문 비평가와의 공동작업 등 비평을 강화하기 위한 예술정책 마련

사업혁신의 분야
<b>8. 심의제도를 혁신하여 사후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예술인들의 심의참여, 지원자가 참관하는 공유심의제, 심의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b>
제안 대상: 예술위

**진 단**

- 현재 심의제도는 폐쇄적이고 독점 체제로 운영되어, 예술가들이 갖는 생각을 심사위원들만이 공유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이는 동시대의 예술가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알 수 없는 악순환을 낳기도 함
- 평가과정 및 결과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심의 평가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을 개방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제 안**

- 현장예술인, 평론가, 전문관객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사후평가를 통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제안
  - 특히 현장예술인의 사후평가작업은 예술인들 사이에 상호 자극이 될 수 있는 긍정적 소통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
  - 최종단계 심의 과정에 PT제를 도입하고 지원자들이 참관하도록 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제안
- 당해연도 심의이후 심의위원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공정한 심의에 기여하는 심사위원 풀을 정비해갈 것을 제안
- 예술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제도를 위해 개방과 공유형 심의제도 확대
  - 개방형 심의제 : 참관인 제도를 운영하여 심의제를 개방

- 공유 PT제 (심의제) : 최종 심의단계에서 PT 심사시 심사대상자들이 참여하여 상호 내용을 학습하는 기회를 마련(적절한 심사대상의 수를 고려하여 운영)
-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원 심의 평가위원 메타 평가
- 기타 낙선 박람회, 신진예술가 추천 제도,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는 사후심사제도
- 심의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예술인 당사자들을 개방직으로 보직
- 선정사업 성과 공개 : 지원사업 사후점검 결과 공유

사업혁신의 분야

**9. 예술인 눈높이에 맞는 예술행정을 위해 지원절차와 정산서류를 간소화하고 행정용어 역시 친숙하게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대상: 예술위, 문체부

### 진 단

- 예술인들과 행정부처가 쓰는 용어와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음. 특히 언어가 갖는 차이가 큼. 기금 사업 등에 예술인들이 신청하고자 할 때, 예술인들은 예술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든 용어들에 벽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 행정용어들은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소통이 가능한 언어로 예술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너무 차이가 있음
  - 예술행정에서 예술인들에게 제시하는 용어들은 예술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예술인들과 향유자들이 쓰는 용어로 예술위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목적을 드러내지 못함

### 제 안

- **현행 보조금 집행 과정을 정비하고 이 중 법령 사항이 아니라 기재부 및 문체부의 지침에 의한 것은 간소화함**
  - 단기적으로는 지원자가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을 선별하여 이를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대신 수행하도록 함
- **행정용어의 생활용어화** : 기금신청 서류 항목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최대한 일상용어로 전환

- 지원 및 정산 매뉴얼에 대한 예술인 수용성 조사를 통해서 행정용어를 일상적인 용어로 대체하여 업무과정 개선을 진행함
- **지원사업 체계의 단순화** : 예술가 입장에서 자기와 관련된 신청가능 사업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업 분류체계 정리가 필요함
- **행정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 e나라도움 정산 간소화 방안, 지원 및 결과보고 등 문서 작업 간소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사업혁신의 분야

**10. 예술인들의 예술행위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르별, 분야별 최저임금 및 공정단가 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대상: 예술위

### 진 단

- 예술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예술창작 활동이 예술가들의 생계문제와 연결되지만, 예술가들이 발휘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환되어야 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재단을 통한 각종 축제 및 행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경우, **다양한 창작 노동의 보수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비일 비재함**
- 최근 나타난 미투 운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동 작업이 요구되는 작품을 위해 구성원들이 희생하는 구조임. 스태프, 배우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내부문제를 공식화하여 예술인 복지 등과 연동되도록 시스템 문제를 정비하여야 함**
- 작품 현실을 반영한 단가를 고려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체계를 마련하여 다양한 사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창작노동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제안

-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급 문화기관 및 재단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 연계 공공계약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용역단가 기준을 마련하고 보급할 것을 제안
  - 특히 조달청 등 공공계약 전담 부서와 매년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보상 단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함
- 장르 / 분야별 최저임금 연구, 표준계약서 의무화, 아티스트 fee, 계약권리
- 교부/ 정산 시 불공정, 불법행위 등에 대한 수혜단체의 관리 책임 강화
- 작품활동 예산 지출 단가 조사
- 작품 제작 전 폭력예방을 위한 규칙 및 가해자 제재사항 마련 등

사업혁신의 분야

## 11. 다양한 공공부문의 예술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매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대상: 예술위, 문체부

### 진 단

- 현행 지원사업이 주로 기존 창작자들 중심의 지원구조로 유지되어 신진 예술가들의 진 입장벽이 매우 높고, 전문과정을 통해서 훈련된 예술인들의 예술적 기술이 제대로 활용 되지 못하고 있음.
  - 일차적으로는 미래 예술현장의 주역이 될 예술계 졸업생 등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최근 사회변화로 인해 각종 사회정책 과정에서 예술적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단절하지 않고도 다양한 사회적/공익적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예술인의 사회적 쓸모를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활동이 곧 창작활동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변화와 혁신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로서 가치가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결과 지원이 아닌 과정 지원을 확장하여 청년 예술인들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함

### 제 안

-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행정혁신 사업 등 문체부와 예술위 관련 부분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정책과정에서 창작자들의 예술역량에 기반한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 효과적으로 예술인 일자리 사업을 구상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

- 이를 위해 각 정부부처의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예술인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대해 정부 협의를 진행함
- 예술인들이 사업 현장에서 도구화되지 않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물론 일자리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을 실시함
- 특히 정부의 다양한 사회정책 과정에서 수반되는 인력육성사업이 장르 특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예술위원회(예술인복지재단과 협력을 통해)에 예술인 일자리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다양한 직업군을 개발하도록 함

사업혁신의 분야

**12.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워크숍, 예술캠프 등 예술인 교류 활성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제안 대상: 예술위

### 진 단

- 예술위가 진행했던 사업구조는 피라미드형으로 진입할 수 있는 예술가들이 많지 않음. 기금 사업에 진입하려는 예술가, 진입을 한 예술가, 진입을 못하는 예술가 등 다양한 층위가 존재
- 예술위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층위를 아우르는 정책이 부재했음.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지원해야 함
  - 특히 이제까지 예술위의 지원이 예술위-개별 예술인의 1:1 대응관계로 진행됨에 따라 예술인 간의 협력과 소통, 그리고 공동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지 못했음.
- 예술위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예술인들과 소통하는 곳이기도 함. 이를 위해서는 함께 소통하는 장을 열어야 함

### 제 안

- 동일한 지원사업에 선정된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워크숍 및 예술캠프 제안
  - 다른 장르와 분야들 간 토론, 워크숍 지원 확대 : 신진 예술가들과 성숙기, 원숙기 예술가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예술캠프 운영 :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소재, 주제만 정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전국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예술가들이 교류하면서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다른 예술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음. 이러한 만남을 통해 예술에 대한 고민과 철학이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통섭과 융합이 일어날 수 있음
- 기타 세대 간 소통, 예술 비평가 간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제안
  -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 간 예술인들의 교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축제 교류, 창작공간 교류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함.

사업혁신의 분야
<b>13.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해 예술이 갖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홍보할 것을 제안합니다.</b>
제안 대상: 예술위

**진 단**

- 신규사업 추진, 기존사업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인력·조직 강화, 예술인의 위상, 권익 보호 등 예술지원정책 전반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삶 속에서의 예술의 가치, 공공지원의 필요성, 국가와 사회에 주는 긍정적 효과 등 가장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물음에 명확하게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추상적이고 상식적 차원의 설명·설득 외에 보다 많은 실증연구들을 근거로 정책화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되지만 그 간 이러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였음
- 실용적 정책설계를 위해서는 현장의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는 실태조사 등의 자료연구가 충분히 있어야 하지만, **현재 예술정책 분야 전반적으로 활용가능한 분석자료가 매우 부족함**(주요 예술계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정책정당화 수준)
- 또한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적극적 활동이 매우 부족함**.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지원정책은 의사결정과정의 순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고 예술지원 정책의 발전은 요원해 질 수 밖에 없음

**제 안**

- (정책컨퍼런스 연례화) 다양한 공공민간 지원주체 및 예술계가 참여하여 문화예술진흥 방향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열린 장(場) 개최
  - 민관합동 컨퍼런스 형태 추진 및 입법부 이해관계 참여 요청(교문위 등)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예술계, 기업 관계자, 유관 공공기관(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참여

\* [참고사례] “Arts Advocacy Day” – AFTA(Americans for the Arts)

- 예술지원 공적자금 확대를 목적으로, 매년 4월경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정부와 의회 대상 대규모 로비 캠페인(전국 문화예술인·단체·기업관계자 1,500여명 참가)

\* 비영리 목적의 로비활동이라는 의미에서 'lobby' 대신 'advocacy'라는 단어 사용

- (주요내용) 예술·예술정책 현황과 관련 이슈 공유 워크숍, 유명인사의 포럼식 강연, 각 지역별 참가자들의 해당지역 상·하의원실 방문, 프로젝트 성공사례 쇼케이스 진행 등

- 대국민 캠페인 등 예술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홍보하고, 이를 강화하여 민간 및 공공재원을 증대하는 다각도 지원노력이 필요
  - 예술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예술위 차원의 활동을 확대함(예술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보여준 다양한 우수사례의 누적과 이를 통한 다각도의 분석결과 등이 유용)
- 정책분석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매년 기존의 실태조사나 백서를 종합하여, 해마다 <한국사회 예술의 가치 보고서>(가칭)를 발행
  - 예술행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여기서 파생되는 국민들의 문화적 삶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 적극적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옹호하는 사업을 제안
  - 정량적 가치 외에 자존감과 행복 등 비정량적 지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 사회의 문화적 전환을 꾀하는 데 예술의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 생산, 제공) 보유 데이터를 가공, 외부에 제공하여 기초예술관련 연구 확산 계기 마련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내 보관된 누적 데이터, 문예연감 발간시 조사된 데이터 등

